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조 법·제도 담당

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약품변경에 따른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관련
질의 결과 알림 **[긴급]**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하여 소각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(요소수) 변경 시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조합이 환경부에 질의·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“약품 변경 관련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” 환경부 질의·회신 결과
 - 통합허가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단순 약품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- 단, 약품 변경에 따른 저장시설 등의 설치사항이 배출시설의 신설(변경)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임
 - ※ 암모니아 저장시설의 흡수탑 설치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해당
 - ※ 암모니아 농도 10% 이상 취급 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” 작성 및 환경부 제출 필요

붙임 : 환경부 질의·회신 문서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대리 김정훈 기술지원팀장 한인성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이민석
 협조자
 시행 한공조 2021 - 338호 (2021. 11. 8) 접수 / www.krema.kr
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 13층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/ 비공개
 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krema@krema.kr

민원 인쇄

신청 정보

신청번호	1AA-2111-0061662
신청일	2021-11-02 16:15:16
신청인 구분	단체
단체명	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진행상황 통지방식	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
진행결과 통지방식	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
보안 설정	예

민원 내용

제목 내용	<p>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</p> <p>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</p> <p>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및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통합허가)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에서 사용 중인 약품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아 래 -</p> <p>가.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최근 중국발 요소 대란으로 폐기물 소각 공정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약품으로 사용 중인 요소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임○ 이에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변경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<p>나. 질의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기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 중인 약품 중 하나인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변경할 경우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? <p>다. 우리 조합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요소수와 동일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단순 약품 종류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끝.
----------	--

첨부 파일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 환경부 (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)
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2111-0088235
접수일 2021-11-02 16:18:26
담당자(연락처) 오현희(044-201-6735)
처리에정일 2021-11-10 23:59:59

답변 내용

통지일 2021-11-08 09:23:21
처리결과
(답변내용)
○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○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약품 변경시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,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○ 통합허가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단순 약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

○ 다만, 약품 변경에 따른 저장시설 등의 설치사항이 배출시설의 신설(변경)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암모니아 저장시설의 흡수탑 설치시 폐수배출시설 해당 등

○ 아울러, 상기 변경신고 신청시 현재 요소수 부족문제에 따른 시설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·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오현희 주무관(044-201-6735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첨부 파일

인쇄